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19095 손해배상(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우승민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김기석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변 론 종 결	2026. 7. 3.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E'라는 브랜드로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F/ G/ H

2) 물품의 명칭: I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섬유재 등임.

2. 본 디자인은 블라우스에 관한 것으로, 라운드 넥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서 허리 부분을 강조해주며, 하단부는 주름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플레어로 디자인된 것을 특징으로 함.

3. 도면 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2는 본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3은 본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4는 본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5는 본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6은 본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7은 본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블라우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참고)도면 1 (전체형상)	도면 2 (정면도)	도면 3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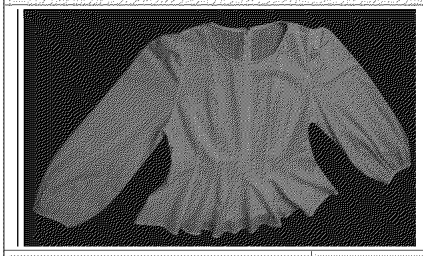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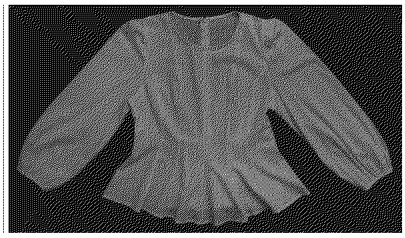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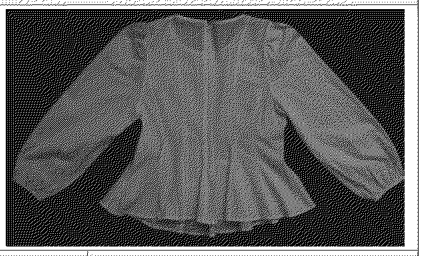

도면 4 (평면도)	도면 5 (저면도)	도면 6 (좌측면도)	도면 7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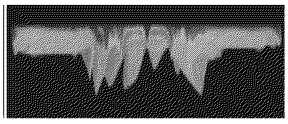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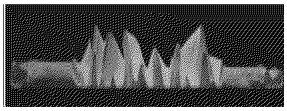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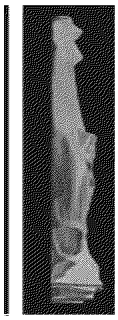	

다. 원고와 피고들의 블라우스 제품 제작, 전시, 판매

1) 원고는 2025. 3. 10.경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블라우스를 'J'(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라는 제품명으로 출시한 후 판매하고 있다.

2) 피고 B는 2025. 8. 28.경부터 같은 해 11. 1.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과 소외 주식회사 K에서 운영하는 L 웹사이트(이하 'L'라 한다)에서 'M'(이하 '피고 B 제품'이라 한다)라는 제품명으로 아래와 같은 블라우스를 판매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피고 B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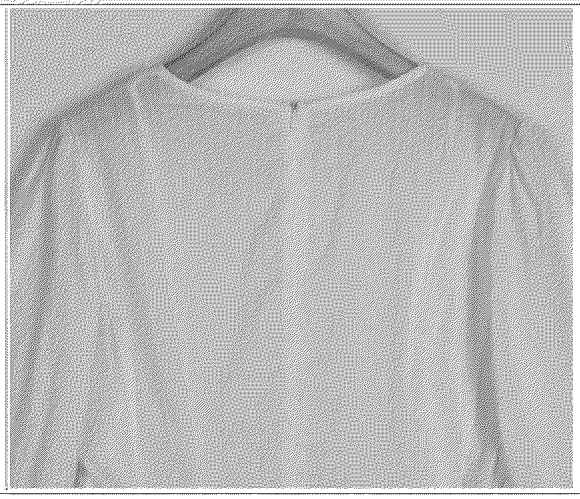

3) 피고 C는 2025. 8. 20.부터 H 이전까지 피고 C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터넷주소 2 생략) 및 L에서 'N'(이하 '피고 C 제품'이라 하고, 피고 B 제품과 통칭하는 경우 '각 피고 제품'이라 한다)라는 제품명으로 아래와 같은 블라우스를 판매하였다.

피고 C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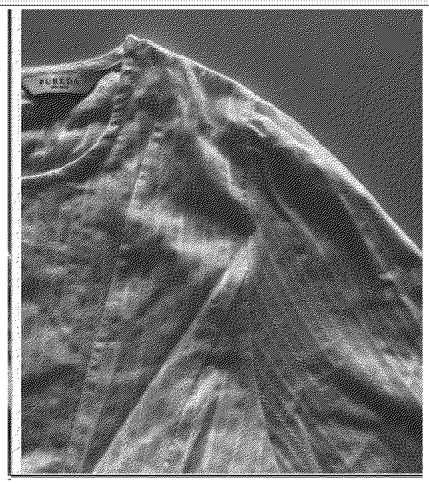

라. 선행디자인

1) 2023. 11. 16.경부터 글로벌 SPA 브랜드인 'O'에서 'P'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었던 디자인으로(이하 '선행디자인 1'이라 한다), 그 사진은 아래와 같다(을가 제19호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선행디자인 1



2) 2024. 9. 이전부터 패션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Q'에서 'R'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었던 디자인으로(이하 '선행디자인 2'이라 한다), 그 사진은 아래와 같다(을나 제1호증).

선행디자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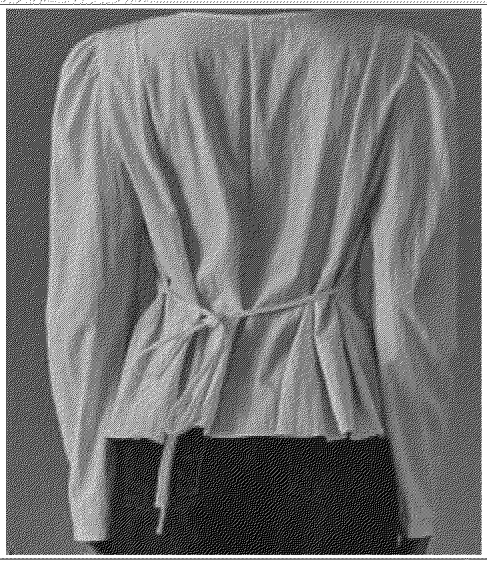

3) 원고가 2025. 3.경부터 패션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Q'에서 'S'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한 디자인으로(이하 '선행디자인 3'이라 한다), 그 사진은 아래와 같다(을가 제20호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선행디자인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4, 6, 19 내지 25, 29호증, 을나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선택적으로, 원고 제품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 내지 그 밖의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각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원고 제품은 원고가 2024. 12.경부터 수개월에 걸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2025. 3.경 출시한 것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각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고의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각 피고 제품을 제작·전시·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각 피고는 원고에게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참조).

2)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12조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입체 절개 패턴의 곡률, 진입 각도, 밑단 확장 각도의 정밀한 조합, 패턴 설계 기반의 플레어 형성 방식, 전후면 각 6조각의 대칭적 절개 구조가 물품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미적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부분들은 원단을 연결하여 의류를 제작하는 통상적 표현 방식들의 조합으로서 원단이나 의류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단이나 의류로부터 쉽게 분리 가능한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제품 디자인이 소재, 색상, 배열, 패턴 등 어느 모로 보나 창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제품 디자인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고 제품을 제작, 출시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였는지, 해당 성과를 이루는 데에 소요된 인력이나 시간은 얼마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② 통상적으로 블라우스를 디자인하는 업체가 투입하는 투자나 노력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가 원고 제품에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갑 제17 내지 20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이 각 피고 제품을 출시한 2025. 8.경 원고 제품으로 인하여 여성 의류 업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고객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디자인보호법 제43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여기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B 제품의 디자인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공지 부분 이외의 특징적인 부분에서 오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B 제품 디자인은 ① 둥근 넥라인과 퍼프 소매를 구성한 점, ② 블라우스 정면과 배면은 각 6개의 천 조각이 세로 방향으로 재봉되어 봉제선이 두드러진 채 결합되어 있고,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3조각씩 천 조각이 대칭 구조를 이루는 점, ③ 위 각 천조각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져서 전체적으로 어깨 부분 가로 길이보다 허리 부분 가로 길이가 긴 플레어 형태인 점, ④ 배면의 가로 방향 중앙에 지퍼가 존재하고, 지퍼는 블라우스의 전체 길이 중 절반 이상까지 세로 방향 일직선으로 열리도록 길게 형성된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나)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목 부분이 비교적 얕게 파인 반면, 피고 B 제품은 목 부분이 넓고 깊게 파여 더 개방된 형태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 끝쪽에 위치한 천 조각이 다른 천 조각과 유사한 너비로 넓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 B 제품의 양 끝쪽에 위치한 천 조각은 다른 천 조각의 절반에도 이르지 않는 너비로 좁게 형성되어 있어서 블라우스의 전체 너비도 서로 차이가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각 천 조각에 가는 두 줄의 물결선, 굵은 한 줄의 직선, 가는 지그재그형의 선이 세로 방향으로 뚜렷하게 교대로 반복되는 반면, 피고 B 제품은 각 천 조각에 가늘고 단순한 직선이 세로 방향으로 비교적 균일하게 반복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다) 그런데 위 공통점 ①은 선행디자인 1, 3에, 공통점 ②는 선행디자인 2, 3에, 공통점 ③은 선행디자인 1, 2, 3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공지된 부분이므로 유사 여부 판단에서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고, 공통점 ④는 배면의 블라우스 내부에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한다. 반면, 차이점 ㉠, ㉡, ㉢은 블라우스의 정면 또는 전체에 걸쳐 형성된 구체적인 형상이자 전체적인 디자인의 구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제품의 사용이나 거래 시 주의를 끌기 쉽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시선을 끄는 장식적이고 역동적인 세로선과 플레어 형태가 두드러져 제품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B 제품 디자인은 넓게 파인 목 부분과 단순하고 균일한 세로선이 두드러져 제품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정돈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B 제품 디자인은 공지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였을 때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B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등록한 이후에도 피고 C가 피고 C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등 디자인보호법상의 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C 제품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판사 김지영